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29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29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52004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아람

변론 종결2022. 8. 16.

판결 선고2022. 9. 2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520046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9,218,290원 및 그중 9,097,183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9,218,290원 및 그중 9,097,183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에 관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서,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B였다(즉,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8면 각주 2)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관형

판사이상아

판사조성필

별지

1)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보다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배상을 명하지는 않기로 한다.